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조정훈 · 김도읍
이주영 · 이현승 · 고동진
김용태 · 곽규택 · 박정하
우재준 · 이만희 · 김선교
서지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, 약취·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‘범행수단의 잔인성’과 ‘피해의 중대성’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·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,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.

이에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 약취

- 유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1호).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한정한다”를 “한정하되, 같은 조 제6호의 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죄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)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(이하 “신상정보”라 한다)를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1.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(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) 2. 3. (생략) ② ~ ⑨ (생략)	제4조(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하되, 같은 조 제6호의 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죄 및 「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-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